

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 
제9차 교육위원회

#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 근거 마련 〉

■ 정성국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3465호)

2025. 11.

교 육 위 원 회

전문위원 윤상열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| 1 |
| 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| 1 |
| III 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| 2 |
| 1.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 근거 마련 ..... | 2 |
| 2. 개정안 부칙 .....               | 7 |
| [참고자료] .....                  | 8 |

## 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정성국의원 등 14인
2. 발 의 일 : 2025. 10. 2.
3. 회 부 일 : 2025. 10. 10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·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·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.

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·지역학부모지원센터·학부모회 등 학부모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 국가·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·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법률에 ‘부모 등 보호자’의 자녀교육·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·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(안 제13조제4항 신설).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 근거 마련

##### 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, 학교 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, 관련 시책의 수립·실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4항 신설).

##### [개정안 조문대비표]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3조(보호자) ① ~ ③ (생략)<br>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13조(보호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><br><u>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해야 한다.</u> |

## 나. 검토의견

□ 「교육기본법」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·의무,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<sup>1)</sup> 제1장 총칙, 제2장 교육당사자, 제3장 교육의 진흥 등 총 3장으로 구성됨.

보호자는 제2장 교육당사자 중 제13조(보호자)에 규정된 교육 주체로, 해당 조항에는 보호자와 관련하여 ‘(제1항)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, (제2항)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, (제3항)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·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’ 등이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권리와 책임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, 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, 관련 시책의 수립·실시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.

---

1) 「교육기본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·의무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개정안에 따라 보호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, 보호자의 자녀교육, 학교협력 등 권리와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므로,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- 다만 개정안이 규정된 제2장 교육당사자는 조문별로 규정된 교육 주체의 권리,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해당 교육 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참고로 정성국의원안이 대표발의한 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13464호)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- 아울러 김준혁의원안이 대표발의한 「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13385호)에서도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① 해당 내용을 정성국의원안은 제2장 교육당사자 제13조(보호자)에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반면, 김준혁의원안은 사안별·분야별 교육이 규정된 제3장 교육의 진흥에 조를 신설하여 규정함.<sup>2)</sup>

---

2) 「교육기본법」 ‘제3장 교육의 진흥’에 포함된 조항 예시

제17조의3(학습윤리의 확립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·연구·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책의 수립·실시에 대해서 두 개정안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③ 그 내용으로 정성국의원안은 같은 조(제13조(보호자))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인용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, 김준혁의원안은 별도의 조를 만들어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함.

④ 또한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성국의원안은 신학기 시작 등을 고려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김준혁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함.

두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 근거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책의 수립·실시 주체와 내용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, 조문위치와 규정 방식, 시행일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, 단일한 기준 마련을 위해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.

---

제17조의7(평화적 통일 지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제22조(과학·기술교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·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2(기후변화환경교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## [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 관련 법률 개정안 ]

| 구분                | 정성국의원안(제2213465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준혁의원안(제2213385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<br>조문위치         | · 제2장 교육당사자<br>- 제13조(보호자)제4항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제3장 교육의 진흥<br>- 제30조(보호자 교육 등 지원)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<br>시책수립<br>실시주체 | 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·실시<br>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·실시<br>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<br>시책내용         | ·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모 등 보호<br>자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<br>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<br>-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<br>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<br>리와 책임<br>-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<br>학교에 의견 제시<br>-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 판단으로 학생을<br>교육·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·준중 | ·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<br>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<br>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<br>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<br>위한 시책 |
| ④<br>시행일          | ·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.

### [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]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○ <b>교육부: 일부수정</b></p> <p>-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에 공감함.</p> <p>- 다만, 「교육기본법」은 제2장에서 교육 당사자(학습자, 보호자, 교원 등)의 권리·의무·책임 등을 정하고 있고, 제3장에서 국가·지자체의 시책 수립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,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위치를 제2장에서 제3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(법제처 검토의견 관련).</p> <p>- 아울러, 동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, 국가·지자체의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, 개정안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</p> |
| <p>○ <b>충청남도교육청: 일부수정</b></p> <p>-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책의 목표·내용, 국가·지자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○ <b>법제처: 일부수정</b></p> <p>- 「교육기본법」 제2장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당사자가 갖는 권리·권한,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, 제3장은 ‘교육의 진흥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 수립 및 실시 의무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, 개정안의 내용은 제3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개정안 부칙

### 가. 개정안의 요지

□ 개정안 부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.

#### [개정안 조문]

| 안 부칙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
### 나. 검토의견

□ 개정안은 보호자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·실시를 규정하면서, 부칙에서 이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.

□ 이는 가장 가까운 신학기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, 부모 등 보호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13464호)의 이행을 위해,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
02)6788-5189

## 참고 1

##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 근거 개정안 원문

| 현행                   | 정성국의원안(제2213465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준혁의원안(제2213385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3조(보호자) ① ~ ③ (생략) | 제13조(보호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3조(보호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               |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해야 한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0조(보호자 교육 등 지원)<br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|
| 부 칙                  | 부 칙<br>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 칙<br>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